

「주택보증 채권관리규정」 등 개정 사전예고

1. 규정 명칭

- 「주택보증 채권관리규정», 「주택보증 채권관리 업무처리기준」

2. 제·개정 이유

- 회수금 충당방법 명확화, 소멸시효·공탁금 관리강화 등 기금건전성 제고

3. 주요 제·개정 내용

- 가. 수 개의 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충당순서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정비
- 나. 강제집행 등을 통해 회수한 배당금 충당과 관련하여 손해금 회수상한제 적용배제
- 다. 소멸시효 완성 검토시기 명확화를 통한 시효관리 강화
- 라. 신용회복 신청한 채무관계자에 대한 공탁금 관리방법 개선
- 마. 기타 타 내규 개정사항 반영 등

4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개인은 2023년 8월 17일까지 (도착기준)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관리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
- 나. 제출자의 성명(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, 이메일 주소

<보내실 곳>

- 주소 :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(문현동, 부산국제금융센터)
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관리부
- 담당자(이메일) : 이상화 차장(1677@hf.go.kr)
- 전화번호 : 051.663.8119
- 팩스번호 : 0505.036.0763

붙임1. 주택보증 채권관리규정 개정 전·후대비표 1부

2. 주택보증 채권관리 업무처리기준 개정 전·후대비표 1부. 끝.

반환보증 채권관리규정 개정 전후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비고
제30조(시효관리) ① (생략) ② 업무담당자는 수시로 시효완성 기일을 점검하여 채무관계자별 <u>최초</u> 시효완성기일 도래 <u>1개월 전까지</u> 시효중단조치 <u>착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.</u> ③ ~ ④ (생략)	제30조(시효관리) ① (생략) ② 업무담당자는 수시로 시효완성 기일을 점검하여 채무관계자별 시효완성기일 도래 <u>3개월 전 시효 중단조치에 착수하여 1개월 전까지</u> 시효중단조치를 취해야 한다. ③ ~ ④ (현행과 같음)	시효중단 착수시기 명확화
제33조(회수금의 충당순서) ① ~ ② (생략) ③ <u>주채무연대보증인이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해당인의 관련 채무에 우선 충당한다.</u> ④ <u>제1항 및 제2항의</u> 충당순서를 변경하여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채무자에 불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어 처리한다. ⑤ (생략)	제33조(회수금의 충당순서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수 개의 채권이 경합하는 경우, 각 채권 사이의 충당순서는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u> ④ <u>제1항부터 제3항의</u> 충당순서를 변경하여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채무자에 불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어 처리한다. ⑤ (생략)	수 개의 채권이 경합하는 경우, 충당순서 근거규정 마련
제80조(상각채권의 관리범위) 상각채권에 대한 관리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<신 설>	제80조(상각채권의 관리범위) 상각채권에 대한 관리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<u>구상채권을 상각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채무의 상환 및 채무 조정제도를 안내하는 문서를 발송한다.</u>	상각채권 채무조정 안내 근거규정
제82조(구상권의 시효완성) ① 구상실익 없는 채권은 “소멸시효 중단 절차 포기(완성) 품의서”에 “재산조사표”를 첨부하여 소멸시효완성 <u>1개월</u> 전까지 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어 소멸시효를 완성시킨다. (단서 생략) ② ~ ③ (생략)	제82조(구상권의 시효완성) ① 구상실익 없는 채권은 “소멸시효 중단 절차 포기(완성) 품의서”에 “재산조사표”를 첨부하여 소멸시효완성 <u>3개월 전부터 1개월</u> 전까지 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어 소멸시효를 완성시킨다. (단서 현행과 같음) ② ~ ③ (현행과 같음)	시효완성 착수시기 명확화
<신 설>	부 칙 (19) <u>이 규정은 2023년 8월 00일부터 시행한다.</u>	

현행	개정안	비고
(2) (생략) 나. 연장시효관리 (1) 소멸시효가 다시 도래한 때에는 관리규정 제30조제2항 및 제30조의3에 따라 <u>시효완성 1개월 전까지</u> 재산조사 및 채무관계자 현황조사 등을 실시하여 향후 특별하게 구상권이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한 소멸시효중단 조치를 생략한다. (2) (생략)	<u>중단조치를 착수하여 시효완성 기일 1개월 전까지</u>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<u>취해야</u> 한다. (2) (현행과 같음) 나. 연장시효관리 (1) <u>위의 “가” 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연장된 구상권은 시효도래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시효완성기일 3개월 전에 소멸시효중단조치를 착수하여 1개월 전까지</u> 재산조사 및 채무관계자 현황조사 등을 실시<u>결과</u> 향후 특별하게 구상권이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한 소멸시효중단 조치를 생략한다. (2) (현행과 같음)	상동
제8절 구상권의 집중관리 1. <u>채권관리센터</u> 집중관리 대상채권 (생략) 가. 대위변제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개인 구상권(상각채권 포함). <u><단서 신설></u> (이하 생략)	제8절 구상권의 집중관리 1. <u>종합금융센터</u> 집중관리 대상채권 (현행과 같음) 가. 대위변제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개인 구상권(상각채권 포함). <u>다만, 구입자금보증 구상권은 발생 즉시 집중관리한다.</u> (현행과 같음)	구입자금 구상권 관리부점 일원화
제8절의2 <신설>	제8절의2 구상금의 회수 1. <u>회수금 충당순서</u> <u>규정 제33조제3항의 “채권이 경합하는 경우” 충당순서는 다음에 따른다.</u> (1) <u>주채무와 연대보증채무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주채무에 먼저 충당한다.</u> (2) <u>채무조정 약정액 상환 등 채무관계자가 임의상환하는 경우에는 대위변제금에 안분비례하여 충당한다.</u> (3) <u>위 2)에도 불구하고 채권보전조치 해제를 위한 지정충당 변제금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에 따른 특정목적물로부터의 회수금은 해당 구상권에 먼저 충당한다.</u>	회수금 충당순서 명확화 및 손해금 회수상한 적용대상 축소

현행	개정안	비고
	2. 손해금 회수 상한 <u>손해금은 최초 대위변제원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회수할 수 없다. 다만, 강제집행 관련 회수금 및 「보증유의 및 부실자료제출에 관한 업무처리기준」 “부실자료제출 확정자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.</u>	
제15절 상각채권 및 소멸시효완성채권 1. <u><신 설></u>	제15절 상각채권 및 소멸시효완성채권 1. <u>구상채권 상각 사실 등의 통지</u> <u>구상채권을 상각한 때에는 상각 즉시 주채무자에 대하여 <공사 소정양식> ‘채무정리 및 채무조정제도 안내문’을 발송해야 한다.</u>	상각채권 채무조정 안내
<u><신 설></u>	<u>부 칙 (29)</u> <u>이 규정은 2023년 8월 00일부터 시행한다.</u>	